

##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과 서울광역자활센터(이하 “협력기관”이라 한다)는 50+세대의 양코르커리어를 위한 일자리모델 발굴과 자활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, 양 기관의 정보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의 50+세대의 양코르커리어를 위한 일자리모델 발굴과 자활기업의 성장가능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**제3조(협력내용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서울시 50+보람일자리 사업 50+자활기업펠로우십 협력 운영
2. 50+세대 일자리모델 발굴 및 양코르커리어 전환지원을 위한 협력
3. 자활기업 성장가능성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연계
4. 기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

**제4조(비밀엄수)**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5조(협약기간)** 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**제6조(협약의 해지)**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. 다만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1. 협약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
**제7조(신의성실의 원칙)**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,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 년 6 월 8 일



대표이사 이 경 희





센터장 정 찬 희

